

HiT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학과(전공) 배정에 관한 규정

2025. 05. 01. 최초제정

2025. 07. 01. 부분개정

2025. 08. 01. 부분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이라 한다) 학칙 제25조의3에 따라 자율전공학부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학과(전공)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학과(전공) 배정이란 자율전공학부에서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의 학과(전공)를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이 규정은 자율전공학부 교수, 조교,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 적용된다.

②자율전공학부 학생이 개별 전공으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학부 운영 조직

제4조(학부장) ①이 학부에는 학부장 1인을 둔다. 학부장은 학부를 대표하여 학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②학부장은 학부의 인사, 예산편성 및 집행, 그 밖에 중요 정책 결정시 관련 부처장과 협의하여 학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한다.

제5조(전임교원) ①이 학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임교원을 둔다.

②이 학부의 전임교원은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2. 학생의 학사지도·진로·생활지도 등 상담에 관한 사항
3.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
5.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6. 학생의 전공탐색 및 학과배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학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조교) ①이 학부의 효율적인 학부운영 지원을 위해 1인 이상의 조교를 둔다.

②조교 자격, 임무 및 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조교임용규정」에 따른다.

제3장 교육과정

제7조(교육과정) ①자율전공학부의 교육과정은 교양 교과목과 진로 및 학과(전공)를 탐색할 수 있는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며, 타 학과(전공)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
1. 교양 교과목 : 일반교양 교과목
2. 전공 교과목 : 학과별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전공 교과목 및 자율전공학부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
3. 타 학과 전공 교과목 : 학과별 전공 탐색 및 자기설계 전공을 위한 타 학과 전공 교과목

②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

제8조(수강신청) ①수강신청의 최저학점은 매학기 12학점으로 하며, 최대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8.01.>

②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3일 전부터 할 수 있다.

③각 학과에서는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전공기초 교과목을 미리 정하여 안내하되 일부 학과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25.08.01.>

④ 삭제 <2025.08.01.>

⑤타 학과(전공) 수강 시 해당 학과(전공) 교과목을 신청 할 수 있으며,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학과(전공)을 배정할 때 또는 자기설계 전공을 설계할 때 전공 교과목 이수로 인정한다.

⑥학생의 수강신청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소속 학과장이 확인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1.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 이수의 적합성 여부
2. 이수 성적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이수의 타당성 여부
3. 수강신청 교과목의 수강 가능 여부 및 학점 상하한선의 저축 여부
4. 학생의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공의 수강 지도

제9조(성적평가) 교과목의 시험은 중간시험, 학기말시험, 수시평가 등으로 구분하며, 평가방법은 교과목 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대학 「학칙」, 「학칙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」에 따른다.

제5장 학과(전공) 배정

제11조(배정시기) ①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의 학과(전공) 배정은 1학년 1학기 성적공시 마감 후 2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실시한다.

②학과(전공) 배정을 받지 않고 자율전공학부에서 개설한 트랙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.

제12조(배정신청) ①학과(전공) 배정 대상자는 [별지 제1호 서식] 학과(전공)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 확인 후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학부는 신청서를 취합 후 자율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과(전공) 배정 결과를 교무처에 일괄 제출한다.

③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성적을 인정받고 학과(전공) 배정 전 휴학을 할 경우에도 학과(전공)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학과(전공)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자율전공학부에서 개설한 트랙전공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.

⑤자율전공학부 학생은 학과(전공) 배정으로 인한 소속변경 전 별도의 전과 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13조(배정기준) ①학과(전공) 배정은 대상자의 희망 학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학과(전공) 배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
③학과에 따라 입학 시 면접 또는 실기 전형을 실시한 경우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학과(전공) 배정 시 유사한 면접 또는 실기를 시행할 수 있다.

④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과(임상병리학, 방사선학, 치기공학, 치위생학, 물리치료학, 작업치료학)와 유아교육학과, 의무부사관과(응급구조학전공), 국방응급의료과는 전과 기준에 따라 전과할 수 있다. 다만, 간호학과는 전과 및 학과(전공) 배정이 불가하다.<개정 2025.08.01.>

⑤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와 같이 인증을 받는 학과는 교원확보율 기준 충족여부 및 해당학과 인증기준 및 상위법에 따라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⑥학과(전공)별 학과(전공)배정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배정한다.

1.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
2.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
3.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
4. 기타 대학이 정하는 기준

제14조(이수학점 인정) ①자율전공학부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은 학과(전공) 배정 시 모두 인정하며 전공 교과목은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고, 이 외의 전공교과목은 공통선택이나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학과(전공) 배정 전에 이수한 타 학과(전공) 개설 교과목의 경우 타 학과(전공)에서 개설된 교과목 이수구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전공교과목 중 일부는 공통선택으로 할 수 있다.

제15조(소속변경) ①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학과(전공)를 선택하여 배정된 후에는 배정된 학과(전공)로 소속이 변경된다.

②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해당 학과(전공)에서 정한 교양 및 전공 교과목 등 졸업조건을 만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이 학과 소속으로 이수한 타 학과 전공학점은 학과 배정 결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

있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6조(등록금의 적용) 최초 입학 시 자율전공학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속 변경 후에는 해당 학과(전공)의 등록금 적용을 받는다.

제17조(세부사항)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,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8조(학위수여)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학과의 학위를 수여한다.

제6장 자율전공운영위원회

제19조(구성) ①자율전공학부의 운영,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및 전공 배정 등에 대한 운영과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자율전공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계열 또는 전공 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제20조(임기) ①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부 정책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
2. 학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한 주요사항
3. 교육과정 편성·개선·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4. 학생의 학과(전공) 배정에 관한 주요사항
5. 그 밖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2조(회의 및 의결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위원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23조(보칙) ①이 대학교의 제규정은 이 규정에 우선하며, 이 학부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.

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율전공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운영된 관련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